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2월 15일
의회 운영 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2월 6일, 정순기 의원 외 5명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3년 2월 15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정순기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우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가 제1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로 변경함(안 제4조)
 -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함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에 의거 정례회의 집회일과 정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안 제4조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“11월 18일”에서“11월 23일”로 변경하고, 안 제5조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“제2차 정례회”에서 “제1차 정례회”로 변경하는 것임.
- 이에 각 정례회별 심의안건에 맞는 집회일을 반영함으로써 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관련 법령의 근거규정 및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,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의회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